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자 유 무 역 지 역 의 지 정 및 운 영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외국물품을 관세영역,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동일 자유무역지역내 다른 입주기업체로 반출하려는 경우 반출 신고를 하도록 정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37조 인용 조항을 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제1항 신설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37조의 인용 조항을 개정된 법률에 맞춰 조정 (안 제25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는 같은 법 제70조(과태료) 제2항 12호 신설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별표 제1호 타목 및 제2호 나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 없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법 제37조제1항”을 “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제1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반출신고를 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 제12호	200만원
------------------------------------	----------------	-------

별표 제2호나목8)·9)를 각각 9)·10)으로 하고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 제12호			
가) 외국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1일 이내에 반출신고를 한 경우		10만원	20만원	40만원
나) 외국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출신고를 한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다) 외국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출신고를 한 경우		30만원	60만원	120만원
라) 외국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반출신고를 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별표 제2호나목9) 중 “법 제37조제1항”을 “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장치기간 경과물품의 통보) <u>법 제37조제1항</u>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화물의 원활한 반입·반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반출 또는 매각 등의 조치를 위하여 장치기간 경과물품에 대한 현황을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16. 7.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1. 위반행위의 횟수가 적용되지 않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table><tr><th>위반행위</th><th>근거 법조문</th><th>과태료 금액</th></tr><tr><td colspan="3">가. ~ 카. (생략)</td></tr><tr><td>< 신 설 ></td><td></td><td></td></tr></tabl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 카. (생략)			< 신 설 >			제25조(장치기간 경과물품의 통보) <u>법 제37조제2항</u>----- ----- ----- ----- ----- ----- ----- ----- -----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16. 7.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1. ----- <table><tr><th>위반행위</th><th>근거 법조문</th><th>과태료 금액</th></tr><tr><td colspan="3">가. ~ 카. (현행과 같음)</td></tr><tr><td>타. <u>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반출신고를 한 경우</u></td><td><u>법 제70조제2항 제12호</u></td><td>200만원</td></tr></tabl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u>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반출신고를 한 경우</u>	<u>법 제70조제2항 제12호</u>	200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 카. (생략)																			
< 신 설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u>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반출신고를 한 경우</u>	<u>법 제70조제2항 제12호</u>	200만원																	
2. 위반행위의 횟수가 적용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가. 일반기준 (생략)	2. ----- 가. 일반기준 (현행과 같음)																		

나.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 7) (생략)				
< 신 설 >				
8)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57조의2를 위반하여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않은 경우 가) ~ 마) (생략)	법 제70조제3항 제3호			
9)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국외 반출명령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3항 제4호			
10) 삭제 <2016. 7. 26.>				

나. -----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 7) (현행과 같음)				
8)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외국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1일 이내에 반출신고를 한 경우 나) 외국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출신고를 한 경우 다) 외국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출신고를 한 경우 라) 외국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반출신고를 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 제12호	10만원	20만원	40만원
		20만원	40만원	80만원
		30만원	60만원	12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9)(중전의 8)) 법 제37조제2항에 ----- ----- -----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 ----- ----- ----- ----- ----- -----			
10)(중전의 9))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국외 반출명령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지원팀	
연 락 처	(044) 203 - 4631